

「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」

제1조 적용범위

“급여하나 월복리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, “연금하나 월복리 적금” 또는 “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” 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.

제3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, 2년, 3년 중에서 정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입니다. 단, 청년유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 이상 150만원 이내입니다

제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

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1만원이상 30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. 단, 청년유원 특별금리 적용 기간은 분기당 1만원 이상 150만원 한도내 적립이 가능합니다.

제7조 자동 재예치

- ① 이 예금은 가입일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,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며,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체됩니다.
- ② 자동 재예치 선택후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.
- ③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,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.
- ④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자동재예치를 해제하는 등 기타 재예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제8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금리를 더하여 월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단리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를 단리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.

제9조 우대금리

- ① 이 예금은 가입후(또는 재예치후)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1.0%의 우대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단,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우대항목	내 용
급여하나 우대 (연0.9%)	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, 계약기간의 1/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인정)-
온라인.재예치 우대 (최대 연0.1%)	이 예금을 온라인채널(인터넷뱅킹/스마트폰뱅킹)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 하는 경우

^(주) 급여 인정 기준

-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
 - ②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 - ③ 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
- 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
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

-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. 금리우대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. 단,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,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제10조 청년 용원 특별금리

이 예금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경우,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연 1.3%의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
단,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, 중도해지 및 재예치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

- ① 급여 입금실적^(주) 보유한 경우 (월 1회 인정)
- ② 하나카드 결제실적(신용/체크)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

제11조 특별중도해지

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, 이 예금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.

- 본인 퇴직, 창업, 결혼, 주택구입

제12조 일부해지

- ① 일부해지는 가입후(또는 재예치후) 매 계약기간동안 2회까지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가능하며, 일부 해지금액에 대하여 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②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부 칙

1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9년 0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2. 이 특약은 2020년 01월 2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
3. 이 특약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
4. 이 특약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
5. 이 특약은 2021년 10월 05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
6. 이 특약은 2022년 03월 2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
7. 이 특약은 2022년 05월 25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
8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